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10. 1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9. 30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0. 4
- 다. 상정일자 : 제1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1. 10. 1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선우근 건설관리과장

가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(1)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중 현수막은 기존에 제사나 종교 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'그 밖의 용도'를 추가하는 등 상위법령의 기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(안 별표 1 제3호)

- (2) 「도로법 시행령」의 차량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0.025에서 0.02로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이상 시설과 기타 차량 진출입로의 산정기준을 0.02 및 0.016로 각각 인하함(안 별표 1 제4호)
- (3)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도로 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으로 적용되는 ‘인접한 토지’를 ‘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’로 명확히 규정한 내용을 반영함(안 별표 1 비고 제1호)
- (4)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「도로법 시행령」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직접 신설 규정하여 그동안 본 조례에서 규정 해온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각각 삭제함(안 제9조의2 및 별표 2)
- (5)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 정비

3. 검토보고 (김기영 전문위원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,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의 일부표현을 정비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
- 현행 도로점용료의 징수체계는 「도로법」 제41조에서 관리청이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점용료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도로는 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
-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2조는 별표 2를 통해 국도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
- 따라서, 2010년 9월 17일 「도로법 시행령」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경우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42조에 의한 별표 2 ‘점용료 산정기준’ 중 안 제3호에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현수막의 범위를 현행의 “제사나 종교 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” 이외에 “그 밖의 용도”를 추가 신설 하였음
- 안 제4호에서 자동차관련시설(주유소 등)과 10면 이상의 부설주차장은 그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현행의 “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”에서 “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”으로 조정 하였고,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관련시설 등 진출입로의 경우는 “토지가격에 0.020를 곱한 금액”에서 “토지가격에 0.016을 곱한 금액”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
- 또한 동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제2호에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설명 중 “인접한 토지”를 “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”로 개정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의 별표 1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,

- 현재는 도로점용료를 산정할 때 점용 신청자와 관리청이 인접한 토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점용료 산정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항상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는데, 그 산정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닮아 있으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닌 토지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
□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현행 조례를 삭제하고 법령으로 대체한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

- 과태료 부과에 관한 「도로법」 제10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징수하도록 하였으나,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이를 규정하고 있었음
- 따라서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4조를 신설하여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다양하게 규정했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「도로법 시행령」 별표 5로 통일된 부과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 제9조의 2(과태료 부과징수) 및 별표 2(과태료 부과기준)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임
- 다만,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74조에 의한 별표 5의 제2호 나목과 다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부과 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

“나목”은 점용허가를 받은 후 초과점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고,
 “다목”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인데

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위법의 정도가 심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낮아 모순이 있으므로 향후 조례로서 별도의 규정을 둘 경우 이를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음

※ 도로법 시행령 [별표 5] <신설 2010.9.17, 개정 2011.5.30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4조 관련)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나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	법 제101조제2항제1호	상한액 200
다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	법 제101조제2항제2호	상한액 150

- 기타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